

보도자료

2014년 12월 23일(화) 배포 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 안건]

가. 방송광고정책과 반상권 과장(1270) 나. 방송정책기획과 양한열 과장(1450)

[보고 안건]

가. 방송정책기획과 양한열 과장(1450) 나.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 열 과장(1520)

2014년 제60차 위원회 결과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,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

[의결안건]

가. 「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(붙임1 참조)

-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7항에 근거하여 「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 ‘방송광고 매출배분(전파료) 분쟁조정 절차’를 마련하는 「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

나.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도입에 관한 건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시청자 편익 증진 및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EBS가 1월 말부터 지상파 MMS 시범서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함

[보고사항]

가. 방송법·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에 관한 사항(붙임2 참조)

- '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'를 국정과제로 채택('13.5)함에 따라 방송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제 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▲방송유형 및 사업 분류체계 개선 ▲진입규제 완화 ▲소유제한 규제 ▲경영규제 근거 신설 ▲금지행위 대상 및 유형 일원화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를 위한 방송법과 IPTV법 통합 정비방안의 주요내용을 보고함

나.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(안) 제정에 관한 사항 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정보의 오·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▲수집 시부터 개인식별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(제3조·제4조·제5조·제10조) ▲빅데이터 처리 사실·목적 등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(제4조·제5조·제9조) ▲개인정보 재식별시,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(제3조·제6조)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'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' 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

<첨부1>

□ 개정 내용

-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절차 신설(개정안 제13조)
 -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
 - 분쟁 당사자간 성실한 합의 노력을 유도한다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 금지
 -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업자와 피신청사업자에게 합의 권고 가능
 -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 회부
 -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통위로부터 조정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
 -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 불성립 통지
-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조항 삭제 (고시 제9조)
 - ※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(자료 제출)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가능

<첨부2>

가. 주요내용

① 분류체계 개선

□ 방송유형 분류

- (방송유형) 방송법상 이동멀티미디어방송(DMB)과 IPTV법에 규정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(IPTV)을 삭제하고 TV/라디오/데이터방송으로 통합함
 - 이동멀티미디어방송과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은 TV, Radio, Data방송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사업의 한 유형이므로 별도의 정의가 필요없음

□ 방송사업 분류

- 방송법상 방송채널사용사업과 IPTV법상 IPTV콘텐츠사업을 '방송채널 사용사업('이하 PP)으로 통합함
-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('이하 SO), 위성방송사업('이하 위성)과 IPTV 법상 IPTV제공사업('이하 IPTV)을 통합한 '유료방송사업'을 신설함
 - '동일서비스 동일규제'라는 일관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

② 규제의 실효성 제고

□ 진입규제

-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되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비실시간 일반PP*는 신고제로 완화함

* VOD 및 게임, 노래방, 증권, 날씨 등 데이터방송

□ 소유제한 규제

<

- IPTV법상 종편·보도 콘텐츠사업자의 소유제한 규제를 방송법상 종편·보도PP 수준으로 일원화함

- IPTV법을 통해 방송시장에 진입한 종편과 보도 콘텐츠사업자는 없으며, 방송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사업자만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함

□ 직접사용채널 운영

- 현행 방송법상 성격과 운영범위가 모호한 '직접사용채널'을 '공지채널*'로 한정하여 IPTV를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허용함

*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 제작·편성·송신 기능, 보도·논평·광고에 관한 사항 금지

□ 콘텐츠 동등접근권*

- 향후 유료방송사업자가 저가 요금보다 질 높은 콘텐츠 확보 경쟁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PTV법상 해당 규제를 폐지함

* IPTV콘텐츠사업자의 IPTV제공사업자에 대한 차별없는 채널제공을 위해 IPTV법에만 존재

□ 유료방송 요금

- 결합상품을 통한 불공정한 요금할인 경쟁 등 시장혼란 예방을 위해 승인제를 유지하되 VOD 등 부가서비스는 신고제로 완화함

③ 규제의 형평성 제고

□ 경영규제

-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**합산규제**(특수관계자 포함)와 **지상파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간 경영제한 근거를 신설함**

- (1안) 점유율제한 대통령령으로 위임

- (2안) 점유율제한 33%로 하되, 3년 후 일몰

□ 채널간 양도·양수

- 등록 PP가 '변경등록'을 통해 다른 등록 PP의 채널을 양도·양수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
 - ※ 현행 방송법은 법인 분할·합병 및 주식매입을 통한 인수만 가능하고, IPTV법은 콘텐츠사업자의 채널 양도·양수를 허용

□ 공정경쟁 관련사항

- (금지행위) 방송법과 IPTV법상 금지행위 대상과 유형을 일원화함
 - 적용 대상을 IPTV콘텐츠사업자를 포함하여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함
 - ※ 현행 IPTV법상 금지행위 적용대상자에 IPTV콘텐츠사업자는 제외되어 있음
 -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시 규제근거 등을 마련함
- (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*) 공정경쟁 및 시청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유의미한 제도이므로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함
 - * 현행 IPTV법은 IPTV제공사업에 있어 설비보유사업자와 비보유사업자간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
- (회계분리) IPTV 제공사업자에게만 부과되었던 회계분리 의무를 전체 유료방송사업자로 확대함

□ 허가·승인제도

- 방송법에 IPTV법과 같이 허가·승인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고시로 위임할 수 있는 방송법상 근거를 마련함
 - 방송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고시로 규정함

□ 방송평가

- 방송법상 방송평가 대상에 IPTV사업자가 제외되었으나 평가대상에 포함시킴

□ 기타

- IPTV사업자에 공익채널 운영 의무를 추가하고 IPTV 허가유효기간을 변경(5년→7년)한 IPTV법 개정내용* 반영

* IPTV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('14.12.9)